

제405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4월3일(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5)
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0)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4)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6)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5)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16)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9)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2)
10.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6)
1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0)
12. 아세안인권기금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65)
1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3)
1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4)
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2)
1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2)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8)
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7)
1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0)
2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0)
2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6)
22.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9)
2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1)
24.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0)
25.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2)
2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6)
2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6)
2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3)
2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6)
30.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4)

31.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5)
32.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6)
3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2)
3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1)
3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5)
3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0)
3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2)
3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7)
3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1)
4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4)
4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5)
4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9)
4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9)
4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3)
4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5)
4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4)
4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4)
4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2)
4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7)
5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0)

상정된 안건

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 4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5) 4
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0) 4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4) 4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6) 4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5) 4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16) 4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9) 4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2) 4
10.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6) ... 4
1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0) 4
12. 아세안인권기금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65) 4
1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3) 4

1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4)	4
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2)	4
1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2)	4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8)	4
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7)	4
1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0)	4
2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0)	4
2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6)	4
22.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9)	4
2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1)	4
24.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0)	4
25.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2)	4
2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6)	4
2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6)	28
2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3)	28
2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6)	28
30.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4)	28
31.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5)	28
32.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6)	28
3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2)	28
3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1)	28
3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5)	28
3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0)	28
3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2)	28
3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7)	28
3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1)	28
4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4)	28
4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5)	28
4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9)	28
4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9)	28
4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3)	28
4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5)	28
4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4)	28
4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4)	28
4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2)	28
4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7)	28
5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0)	28

(14시15분 개의)

○소위원장 이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도 있고 여러모로 바쁘신데 우선 지난번에 우리가 2시에 이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의결 정족수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법안심사소위 안건 중 다루지 못했던 법안들과 새로 추가되는 9건의 통일부 소관 법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법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15)
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0)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4)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6)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5)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16)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9)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2)
10.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6)
1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0)
12. 아세안인권기금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65)

1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3)

1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4)

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2)

1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2)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8)

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7)

1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0)

2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0)

2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6)

22.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9)

2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1)

24.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0)

25.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52)

2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6)

(14시16분)

○소위원장 이명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외교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논의를 하다가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 소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부처 협의를 통해서 그간에 진행된 내용이 있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법안심사소위 자료 I 번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의원안이고요.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 요지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인 3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사항입니다.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배우자 및 그 자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고 재외동포청 설립 취지를 고려해서 사할린동포의 지원을 확대하며 사할린동포 문제와 고려인동포 문제는 별개의 건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의견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난 소위 이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작성했습니다.

2조 2호 동반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반가족의 정의 규정에 단서를 신설해서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4쪽 상단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마는 지난 소위 때 국내유족의 범위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국내유족의 범위를 기존 법에 나와 있는 강제동원 조사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보다 명확하게 정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안 5조 제2항 수정의견은 정부가 국내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근거를 신설하되 그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외교 마찰 등을 고려해서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이중 지급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부칙 제2조에서 강제동원 조사법 등 타 법 입법례에 따라 위로금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우선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명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할린동포법 개정안 기본 취지인 사할린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외교부는 지난 법안소위 당시 집중 제기되었던 국내유족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망한 사할린동포 한 분당 국내유족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분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유족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불분명한 문제와 그에 따른 예산 추계가 어려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아직 정부 내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현 수정안대로 재정 당국과 협의할 시간 여유를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할린동포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혹시 허락해 주시면 기재부하고 실무 협의를 했던 우리 영사국장이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글썄요, 지난번 먼저 2차관님 나오셔서 말씀한 것하고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시도를 했는데도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어떻게…… 경위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예, 직접 협의했던 영사국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영사기획관 김민철입니다.

저희가 목요일 날 법안소위를 하고 끝나고 바로, 그날 유족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유족의 범위를 좀 더 불분명한 점을 없애고자 지금 제안드린 안대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목요일 밤, 금요일 아침 정도에 기재부가 봤을 것 같은데요. 공문으로 일단 수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내부 협의도 있고 스터디도 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재부에서 충분히 이해를 못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된……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오해가 있는 부분이나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안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결과는 좋은데 그 말씀 중에 구체적으로 국내유족 이 부분에 관해서 뭐가 안 된다 그런 것을 딱 특정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다 됐는데 2조 3호의 국내유족 이게 아직까지 범위가 특정이 안 되고 여기에 따른 재정 수반 사항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딱 특정을 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저희가 국내유족의 수정안에, 그 전에는 유족의 범위에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이런…… 배우자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되느냐, 재혼한 경우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사망한 경우에 여기서 사망해야 되냐 아니면 사할린에서 사망해야 되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는 좀 줄여보려고 사망한 사할린동포가 몇 명이 되는지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900명 정도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계가 된 부분 중에 저희가 조사가 확실하게 된 부분은 13년부터 22년간에는 270명이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현존하신 분이 40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부터 13년까지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추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정치라서 기재부에서 좀 이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사망의 범위를 정할 때 1938년부터 1990년 한·러 수교 이전까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게 빌려 온 틀은 약칭 강제동원 조사법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 38년 전에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망한 1건에 대해서 유족대표, 그것은 민법에서 받게 되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대로 받고 그다음에 동 순위가 있을 때는 N분의 1로 숫자별로 나뉘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서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봤는데 아직도 추정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시로 2000만 원 정도의 일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80억 정도를 추계했는데 2000만 원에 대한 근거도 약간 불분명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지에 대한 협의가 완전히 소진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는 그것을 얼마 넣을지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하루 만에 안을 만들어서 제시했는데 역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하여튼 정부 측 의견은 아직 협의가 다 충분하게 안 됐다 그런 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태영호 위원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지요. 사할린에서 여기 오신 분이 한국에 원래 계시던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사셨어요. 그러다 그 본인은 사망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살다가 결혼했던 배우자한테도 그 임대주택이 계속 넘어가느냐 아니면 끊기느냐 이거지요,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그것은 원래 영주귀국에 의해서 저희가 정착지원금을 드리는 부분의 동반가족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본인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남아 계신 분들은, 결혼하셔서 계속 같이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그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아니, 제가 들었던 데 의하면 한국에서 결혼하신 배우자는 그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위원장님?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한국에서 결혼하신 건 안 되고요. 같이 동반을 하였던 가족에 한합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지금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다른데요. 태영호 위원님은 국내에서 결혼한 분을 말씀하세요.

○태영호 위원 국내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 사할린에서 오신 분은 사망했어요, 임대주택에서 사시다가. 그러면 같이 거기 살고 있던 배우자가 그 임대주택을 계승하는가요, 아니면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임대주택에서 나가나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그러니까 그분이 영주귀국 시에 들어와서, 영주귀국에 본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본인이 들어와서 임대

주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할린에 계셨던 동반한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들어오셔서 거기서 같이 생활하고 계셨는데 그러다가 본인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분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새로 결혼한 경우에는 곤란합니다.

○태영호 위원 글썄, 내가 물어보는 건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누구를 만났어, 마음 드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에서 살고 계시다가 사할린에서 오신 분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같이 살던 배우자—한국에서 나서 자라서 그 임대주택에 같이 살던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해당이 안 됩니다.

○태영호 위원 그 집을 내놔야지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예, 맞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거지요, 지금?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예.

○태영호 위원 그런데 이 법이 만약 개정돼서 통과된다면 그 배우자가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생활안정지원금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국내 유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본인이 사망하니까 집을 내놓고 나가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어디 가서 살라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될 때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적용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저희가 제안한 수정의견대로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일시적인 생활안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글썄,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형평성 문제에 맞지 않는다, 지난번에 기재부 국장도 그 얘기지요. 지금 다른 법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할린하고는 관계없이 한국에서 나서 자라서 살다가 사할린에서 오신 분을 만나서 그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분이 사망하니까 집을 내놓고 나가라 이렇게 한다, 이걸 좀 해결해 달라, 지금 민원이 이거잖아.

○소위원장 이명수 맞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외교부의 설명은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는 집을 내놓고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법을 우리가 개정하려는 의도와 외교부의 설명이 지금 다르거든요.

○소위원장 이명수 아니, 제가 보기에선 아까 말씀한 대로 또 여기서 새로운 논쟁, 어차피 지금 저기도 안 되는데…….

사할린에서 귀국해서 오신 분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못 사니까 사할린에서 여기 같이 온 사람인데 재혼을 하는 거예요. 재혼했을 경우에 태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사할린에서 원래 귀국하신 분이 돌아가셔요. 그러면 이분한테 지금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지위가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데 그게 현행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국내 유족이나 이런 것에 이것을 포함시키면 되지요. 되는 걸로 하도록 해야지요.

○태영호 위원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이명수 왜 안 돼요? 되도록 하자는 거지요, 지금.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그런데 저희가 수정의견 낸 거에는 일시적인 생활안정금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원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저번 법안 소위 할 때 그걸 줄여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아니에요. 여기서 또 이것가지고 논쟁하기에는 시간이 좀 아깝고.

그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단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상속의 개념이 일단 배우자한테는 국내법의, 이 사할린법만 그 사람이 적용받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 민법이나 이런 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살던 집에서 사할린에서 들어온 이 법의 원래 보호해 줄 대상자가 사망한다고 해서, 여기에 와서 새로 재혼한 그 사람도 사할린동포예요. 이 사람한테 아무런 것도 없이 나가라고 하느냐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는 거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태영호 위원 그런데 외교부는 보호가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의문스러운 게 과연 그러면…… 우리가 법을 만드는 주목적은 그 배우자도 보호를 받게 하자는 건데 외교부의 법해석은 그러면 보호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탈북민 들하고도 유사한 케이스거든요. 북한에서 와서 한국분하고 결혼해서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북한에서 오신 분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걸 그분이 국가로부터 받은 명의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서 온 분은 승계가 안 되거든요, 임대주택이.

그래서 지난번에 기재부 국장이 말하던 그 형평성 문제에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것 진짜 면밀히 따져놓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외교부 설명이 지금 완전히 어긋나잖아요.

○소위원장 이명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河泰慶 위원 오늘 결론 낼 수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태영호 위원 그래요, 이것 지금 법적으로 대단히 모호해요.

○河泰慶 위원 그리고 또 수정안을 기재부랑 협의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명수 지금 그런 상황인데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을 주시라고요.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으면……

차관님, 말씀하시겠어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위원장님,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개념의 문제도 있고 사례의 문제도 있고 또 기재부하고의 문제도 있는데요. 또 그렇다고 저희가 마냥 시간을 끌면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취지나 이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 딱 어느 시점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길게 안 끌고 한 한 달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기재부하고 의원님들 실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례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그 표현의 자구 수정까지 다 마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한번 기간을 주시면……

○김경협 위원 탈북자도 저기 하게 되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 결혼한 사람도?

○태영호 위원 예, 탈북자만 국가로부터 임대주택을 받으니까.

○소위원장 이명수 그런데 재혼한 배우자가 탈

북자인 경우가 있고 탈북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태영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탈북민은 괜찮아요. 탈북민은 괜찮은데 한국인 하고 받았을 때……

○소위원장 이명수 이것도 그거예요. 마찬가지로예요.

○태영호 위원 가령 내 명의로 집을 받았어. 그런데 본인이 사망했다고 할 때는 그 임대주택은 탈북자한테 해당한 거지 배우자한테는 주택이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김경협 위원 그러면 거기에 결혼한 배우자도 그렇고 만약에 그 배우자랑 결혼해서 낳은 아이도 그렇고 있으면 다……

○태영호 위원 여기 한국에 와서 한국 여성하고 낳은 아이는 탈북민 대우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탈북자만 돌아가시게 되면 아예 그 가족들은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태영호 위원 만약 집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요, 탈북민만 임대주택이 적용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생이나 모든 탈북민 정착지원생활…… 정착지원이 탈북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한국 여성과 낳은 애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탈북민 대우가 안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한 대로……

○태영호 위원 그래서 기재부와 외교부와 법안을 만드는 입법부가 인식의 통일성이 이루어져야지 서로 해석이 다르면 ‘이거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막상 적용 때 안 된다고 하면 이걸 결국은 우리가 개정할……

○소위원장 이명수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게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태 위원님 말씀한 사례가 예를 들면 재혼한 사람이 내내 사할린 동포예요. 그 사람까지는 보호하자는 거지요. 재혼한 사람이 한국인, 여기 국내에 있던 한 사람을 보호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태영호 위원 사할린동포가 여기 규정에 동반가족이라고 다 규정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법을 만들자는 것은 구체적인 실례로 사할린에서 오신 분이 혼자 살다가 한국 여성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본인이 먼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살던 임대주택—생활

정착지원금으로 준 주택—이 한국인 배우자한테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진데, 기재부나 통일부는 안 넘어간다는 거고 우리는 이 법을 해 내면 넘어갈 걸로 생각하고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김경협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지금 현재 이것은 승계가 안 된다 이런 얘기네.

○**태영호 위원** 기재부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이걸 통과시키기 전에 인식공유를 이루어야……

임대주택이 승계가 안 된다는 거지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예, 국내에서 재혼하신 경우에는 법으로는……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인이 같이 사할린에서 오신 분하고 재혼하시면 해당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 얘데요, 지금.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그런데 지금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혼하신 부인이 한국분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한국인하고 결혼했을 경우에, 그것 맞아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그건 맞는 말씀이지요.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여기 와서 재혼을 하더라도 사할린동포하고 재혼을 하면 가능하다?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예, 해당이 됩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은 그게 가능하면 되는 건가요?

○**소위원장 이명수** 그렇지요. 그걸 가능하게 해달라는 거지요. 지금 실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생겼어요.

○**태영호 위원** 사할린동포끼리 결혼하는 것 관계없어요. 왜? 남편도 사할린동포고 여성도 사할린동포니까 아무 문제없어요, 이것은. 그것은 돼. 그런데 남편은 사할린에서 온 사람이고 배우자 여성은 한국에서 태어난 여성이다 이럴 때는 이 여성은 사할린동포가 안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그렇지요. 맞지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태영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남편이 죽었다면 그다음 날부터는 이 집 승계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례는 해당이 되는데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자면 저희가 조금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지난번에 기재부 국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부분을 명백히 해 놓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제기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은 지역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한국……

○**소위원장 이명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됐고……

○**태영호 위원** 봐요. 지금 있잖아요.

○**소위원장 이명수** 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할린 그 당사자는 아무 이의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같이 온 분이 사망하시고 새로운 사할린동포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아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분한테 지금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LH하고 외교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됐고, 그 뒤로 사할린동포 협의회에서 제 방에 찾아와서 ‘이것 입법으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법을 내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위원장님, 그러면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4월 말까지 기재부까지 다 해서 좀 협의하고 타협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방에도 각자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요. 조금 약간 인식의 차이도 있고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할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하여튼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 어차피 의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분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집을 나가냐 마느냐 이런 고통 속에서 걸쭉하면 LH나 또 적십자도 마찬가지고 외교부에다가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걸 해 주시오’ 하는데 이분들이 사는 데 가 보면 몇 평짜리 아주 최저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그런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더군다나 이 문제에 관한 재정 부담이 얼마가 늘어나서 정부의 재정이 얼마 추가되니 이런 얘기를 과연 그분들한테 할 수 있게 하는 건가?

약자들한테 정부가 왜 이렇게 인색해야 됩니까? 돈 수십조 다 우리가 위로금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 우리가 이렇게 까다롭고 인색하게 할 필요없다, 가난한 그분들을, 이제 연세도 많고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벌써 돌아가시고 있고. 그분들을 잘 이렇게 끝까지 보호를 해 주자 그런 취지인데 그 방법론,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협의를 하면 돼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도 그냥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범위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약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역사적인 아픔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포용적이고 웬만하면 그분들을 보호해 주면 좋은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인색하고 약자들에 이렇게 까다롭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다음 말씀 없으시면 이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할 큰 의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차관님 말씀한 대로 앞으로 한 달 내에 하시는 다시 협의를 해서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예.

○소위원장 이명수 이게 끝나면 저한테 다 연락이 와요, 전국의 각 사할린동포회에서 어떻게 됐냐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저희는 그나마 좁혀서 낸 겁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안을 좀 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분들과도 저희가 직접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끝내기 전에 재외동포과에서 여기 검토안으로 가져 왔던 사항 1안, 2안, 3안 이것 설명을 좀 듣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필요하시면 하세요.

외교부 심의관님.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3안은 저번 개정안 그대로고요.

1안은 강제동원 조사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그중에서 저희가 강제동원 조사법에 의해서 사할린동포에 대해서 일시적 위로금을 지불했는데요. 그중에 5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3000명이 받고 한 1100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해당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일부는 지원이 결정됐는데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서 1안에서 혹시 아직 다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중의 일부는 사할린동포법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의 형태로 돈을 드린다는 거고요.

2안은 사할린동포법이 1938년 강제동원이 시작된 때부터 1990년 소련과의 수교가 된 것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련과 수교된 이후에는 한국으로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날짜를 그렇게 정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할린동포 사망자는 90년 이후에도 사망한 자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망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내 유족에 대해서 자녀가 어떻게 되고 배우자가 어떻게 되고, 만약에 자녀가 받을 경우에는 이게 10년을 받게 될지 20년을 받게 될지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 저번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쟁이 됐고, 기재부도 언제까지 그걸 추계해야 되느냐 알 수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건별로 저희가 200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지원을 하고, 받는 분은 유족의 순위를 정해서 1순위는 자녀하고 배우자, 2순위는 형제자매, 3순위는 손자 이렇게 순위를 정해 주고 우선순위인 분이 그 일시적 생활안정금을 받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3안은 저번 개정안과 내용이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명수 이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아까 법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논의하는 걸 들어 봤는데요. 태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의 경우도 합목적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지원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의 생계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 여부는 우연적 사정이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계시면 계속 지원을 받는데 어떤 우연한 사망이라는 사정에 의해서 지원이 끊긴다면 그건 좀 이치에 안 맞지요.

저는 그것은 우리가 형식 논리나 등등의 여러 가지 도구는 합목적적으로 결론을 타당화하기 위한 도구이고 거기에 맞게 유연하게 맞춰야지 사할린동포에 관해서 지원하는 법인데 그분이 재혼했는데 뭐 어찌고저찌고,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건 너무 기계적인 형식논리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충분히 이치적으로 따질 때 생계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고 그중에 우연한 사망이라는 사정에 의해서 그런 사정이 발생했으면 여전히 종전과 같은 지원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협 위원 이 지원금 문제는 임대주택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가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예, 임대주택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지금 해서……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왜냐하면 법의 범위를 넓히셔서 국내 유족에 대해서도 생활안정금을 주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내 유족이 한 파트고 사할린 본인과 동반가족이 또 다른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에는 사할린 본인과 그 동반가족의 범위를 넓히시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유족은 새로 신설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1세의 배우자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은 커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배우자의 정의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배우자의 정의 조항을 좀 더 보충하면 일단 결혼을 한 상태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개념상으로는 유족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은 처음부터 동반가족의 범위에 포섭을 해서 저희가 하면 지금 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살 수 있게, 원래 살던 사람이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니까요, 동반가족의 범위를 저희가 조금 더 해석을 유연하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1·2·3안은 국내 유족입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그래서 하여튼 태영호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포함시켜도 예산 부담이라는 게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당국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영호 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방금 이상민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생활 공동체의 범위 내에서 생활 정착지원 대상 문제거든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사할린동포법을 통과시켜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에 있던 배우자한테까지도 이게 승계가 되는 문제가 제기되면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다른 관련 법들도 우리가 다 수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탈북민들이 어떤 가정이 많은가 하면 같이 살고 있는 생활 공동체인데 그 안에 자녀가 3명 있는데 북에서 데리고 온 자녀—이것은 탈북민 생활 정착지원 대상이 됩니다.—오는 과정에 중국에서 중국 여성과 혹은 중국 남성과

해서 낳아서 데리고 온 자녀—이건 탈북민 대상이 안 돼요.—그다음에 여기 와서 살아가는 과정에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서 또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 안에서 애가 3명 자라는데 그중에서 생활 정착지원이 되는 애가 있고 두세 명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이게 뭐냐?

그런데 사할린 쌍골로 이렇게 되면 탈북민들도 모두 달려와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고 다 이렇게……

○**이상민 위원** 해 주면 되지요.

○**태영호 위원** 글썽,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뭘 논의할 때는 현실을 들여다보고 형평성 문제를 조율하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상민 위원** 태 위원님, 이 법을 딱 그렇게 통과시키고 탈북민에 관한 지원 그것도 바뀌요.

○**태영호 위원** 지난번에 이거 하려고 계속하다가 다른 유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끝내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지요. 기재부가 주장하는 타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걸 할 때.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는 안 해주려고 하니까 그런 건데 형평성…… 지금 말씀하신 탈북민 지원에 관한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그것을 고쳐야지.

○**김경협 위원** 기재부한테 말기는 건 어차피 돈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다 맞춰서 하려고 할 거고 여기에서는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는 아예 형평성 문제까지 맞추려면 다른 똑같은 경우도, 탈북민의 경우도 다 이렇게 맞춰야지. 맞춰서 가야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자,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사할린동포 개정안은 제가 아쉬운 것은 회의 때마다 계속 다음에 협의해 오겠다는 걸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외교부나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나 또 기재부하고 정말 마지막 협의를 해서 다음에 할 때 꼭 되도록 하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이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룰 차례입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오후 3시부터 본회의가 시작이 되고 특히 의사국으로부터 2030 부산엑스포 개최

결의안 처리와 결의문 전달 행사에 꼭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이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민형배·김경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9쪽입니다.

먼저 민형배 의원안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훈장을 수여받은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국외에서 활동하다 발생한 해외위난상황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있으므로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위선양자를 예우하려는 것이므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주된 취지가 김홍빈 대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입법임을 고려할 때 입법정책적으로 소급입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뒤에 부칙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빈 대장의 사고 경위는 10쪽 상단을 참조해 주시고,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재외국민 중 국위선양행위로 훈·포장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영사조력비용을 지원하도록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고 김홍빈 대장의 구조·수색 비용 6800만 원에 대한 정부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 제기입니다. 따라서 부칙 제2조를 신설해서 소급입법 적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신법을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도록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일, 즉 2021년 1월 16일 이후 발생한 건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소급입법은 자료 중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 훈장 관련 참고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김경협 의원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위급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고 해당 상황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영사조력에 대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영사조력비용 자기부담 원칙의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내국민의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 구조 및 구급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재외국민 또한 사건·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무상으로 영사조력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영사조력비용 면제는 국가 재정이 소요됨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관련 부처 의견으로 기재부 의견입니다.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재외국민의 과도한 요구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사설 구급차 이용 시 무상 지원은 국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위원장님, 먼저 민형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고 김홍빈 대장의 사례와 같이 국위선양 활동 중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으로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 내용 중 적용 대상, 지급 범위 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통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안한 수정안 내용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제처가 각기 제시한 의견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마련된 것으로 수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김경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해외 사건·사고로 인하여 재외국민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무상으로 국가가 경비를 지원하도록 영사조력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긴급성 기준만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이송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은 국내에서의 형평성 또 여행보험 가입자와의 역차별 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위급한 상황 발생에 대한 본인의 귀책사유 해석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정안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고의·과실의 불성립 여부는 종국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동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예외 사유가 불분명하고 지금 요건을 심사하거나 판단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러한 소지가 있습니다. 또 개인의 과도한 경비 청구 등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홍걸 위원님.

○김홍걸 위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부터 의의가 있었는데요. 여행자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외국 병원에 묶여 가지고 하루에 수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긴급지원비가 있다 하는데 그게 3000만 원이 한도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데 이것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서 환자 이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이라든가 또 일부 국가에서는 1일 평균 5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진이나 환자 상태 증빙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일단 우리 국민을 국내로 데리고 와서 나중에 나머지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가족들이 병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마련을 위해서 돈을 어디선가 구해 올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병원비 정도는 좀 막아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추후에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도 있고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 4년 전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정책 검토하는 연구용역, 그러니까 ‘해외 우리국민 환자 국내 이송에 관한 정책 연구’라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후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러려면 정책 용역은 왜 뒀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년 전의 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번 법안에 대해서 법안의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뭔가 외교부 측에서도 그동안에 연구한 걸 토대로 대안을 좀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위원님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4년 전 연구용역 빨리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김경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협 위원 지금 국내에서 우리 국민이 조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119구조대가 출동을 하고 119헬기가 출동을 하기도 하지요. 이때 119구조대 비용이나 헬기 비용을 받지는 않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예, 119는 국가가 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해외에는 우리 119가 없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예.

○김경협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국민이 똑같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119의 역할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일단 사람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게 국가의 의무지요, 그것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국내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의무가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해외에서 지금 현재 생명이 아주 위독한 상황이,

조난 상황이 발생했어요. 거기가 우리 119헬기가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대사관 직원이 전화를 해 가지고 ‘헬기 사용료를 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조난당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조난당한 사람이 ‘저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헬기 안 보낼 건가요? 어떻게 할 거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대사관 직원들은 지금 현재 조난 상황에서 당장에 생명이 위독하고 구해야 될 상황인데 그 사람하고 돈 협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사관 직원이. ‘돈 낼 겁니까, 안 낼 겁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상대방이 그 위급한 상황에 돈 안 낸다고 그럴 사람은 없겠지요. 뭐 어떤 형태로든지 다 하겠지요. 그 상황에서 ‘돈이 없어서 좀 신중해야 되겠네’ 이렇게 대답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거기서 그걸 묻고 있는 대사관 직원, 정상적으로 안 보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서 돈 계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긴급한 구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거기서 대사관 직원은 돈 낼 거냐, 안 낼 거냐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된단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나,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내에서는 우리 119가 출동하고 헬기도 출동해서 무료로 구조를 하는데 거기는 ‘무조건 다 돈 내야 된다, 네가. 돈 없으면 안 구해 준다’ 대사관에서 이려고 통보를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공감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김경협 위원 공감을 하면 대책을 세워야지요, 대책을.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외의 경우 물론, 우리 해외안전기획관이 더 구체적인 사례를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환자를 후송하는 에어 앰블런스나 이런 것이 한 번 하면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뭐 예를 들어서 북한산에서 일어난 사고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또 요즘 코로나 이후에 해외여행 자유화되면서 워낙 많은 분들이 나가시기 때문에 사건·사고의 개연성이 굉장히 어떻게 한정해서 예측하기 어려

울 정도로 잠재적인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굉장히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협 위원 그래서 아까 저기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우선 그런 경우에 몇 가지가 해당될 수 있어요. 여행금지구역인데 들어갔다, 본인의 귀책사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에 대해 시행령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요건들을 정해 두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이런 위험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당연히 해야 될 거지요. 국가의 의무지요. 그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행령에서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런 요건들을 만들고 문제는 이런 큰 원칙 속에서는 국가가 이것은 해결한다고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렇잖아요. ‘훈장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못 구해드립니다’ 이럴 겁니까? 그럴 건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을. 훈장받은 사람만 국민이고 그러면 훈장 안 받은 사람은 국민이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성격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위험구역인데 내지는 분명히 거기에 더 이상 가지 말라고 하는 거기가 이미 내려졌거나 이런 경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그건 뭐 본인의 명백한 귀책사유지요. 그렇지요?

그런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하고 원칙은 어찌 됐든지 우리 국내에서 119구조대나 헬기가 출동해서 구조하는 것처럼 역시 해외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비용의 분담 여부는 그러한 귀책사유를 따져서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맡기든 아니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국가가 부담을 하든 이런 형태의 원칙들을 세워야지요.

귀책사유를 지금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안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건 아니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안전기획관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조금……

○외교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 정강 해외안전관리 기획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아까 차관님도 공감하신다고 그랬는데 경비 부담에 있어서 영사조력법 19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조 3항에 보면 사실 현재로서도 해외위난상황에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대신해서 지급하고 또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구상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해외위난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건·사고를 폭넓게 해당하지는 않고 해외위난상황, 그러니까 자연재해 또는 사회적 재난 이것만 해당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요건이나 대상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현재로서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의 범위가 너무나 넓어서 조난사고뿐만 아니라 일반환자 그다음 범죄 피해자, 위난 이게 다 해당되게 사실은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추산을 해 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1년 평균 한 1600건이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외국민의 개념도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하고 여행객이 혼재가 돼 있어서 이것도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력 요건도, 영사조력법 자체가 원래 무자력자에 대해서는 영사조력 비용을 국가에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력이라 함은 그냥 물리적인 자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력도 사실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김경협 위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고려해서 안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겁니다. 계속 검토만 하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검토했으면 안을 만들어야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태영호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119 응급구조가

발동해서 가서 그 사람을 구조할 때 외국인인지 우리 국민인지 가리지 않고 우리는 출동합니다. 제가 외교관 생활을 해 본 데에 의하면 해외도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해외에서 생활하는 기간에 그 나라 119, 영국이나 스웨덴·덴마크에서 응급구조에 실려 간 적도 있고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청구한 적은 한 번도 못 봤는데,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그렇게 긴급위난상황 시에 구조대를 출동시켜서 구조하고 비용을 청구한 적이 있는가요, 그런 사례가?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그 나라에서 말씀이지요?

○태영호 위원 예.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그것은 나라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제 경험으로는 예를 들어서 위급환자가 연락해서 긴급하게 119를 불러서 만약에 미국에서 병원 응급실에 가면 나중에 본인한테 다 청구합니다, 의료보험을.

○태영호 위원 미국에서는 그걸 청구하네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의료보험을 다 청구합니다. 의료보험이 커버가 안 되면 굉장히 많은 액수를 본인이 지불해야 됩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먼저 와서 구제하고 후에 청구서를 보냅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예, 그렇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런 상황이 있으니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군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미리 확인하지 못하니까 일단 구제하고요.

○태영호 위원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겪어 본 것은 구제하고 응급실에서 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 할 때는 본인한테 알려 주거든요. ‘하루 저녁 베드비가 얼마다. 이런데 병원에서 치료받겠느냐, 아니면 나가겠느냐?’ 그래서 나가겠다 할 경우까지만 해 주고 그때는 비용 청구를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응급위난상황 시에. 그런데 실제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구조해 주고 청구한다 이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예,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외국 국민들이 왔을 때 해외 여행자든 뭐든 그렇게 구제하고 비용 청구 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본인이 요구 안 한 걸 우리가 가서 구제했어야 할 때, 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19의 경우에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걸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외교부에서 실질적으로 나라별로 따져 놓고 보고 청구하는 나라와 청구하지 않는 나라 리스트를 분리해 놓고 청구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양방 간의 협정 같은 걸 맺어서 처리할 수는 없는가요?

미국 국민이 여기 왔을 때 우리 119가 미국 여행객 자동 구제해서 치료해 주고 우리는 뭐 안한다 이런 것처럼 미국에 가 있는 우리 해외 여행객이나 우리 사람이 거기 119 구제를 받았을 때 호상 두 정부 사이에 청구 안 한다, 이런 양방 간의 협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라마다 다 다르다면.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게 예를 들어 숫자가 엇비슷하면 국가 간의 협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어느 나라가 그것을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리고 미국과 같은 나라 시스템이 그게 연방정부가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마 아닐 것이기 때문이에요.

○**태영호 위원** 주정부마다 다 다른……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여러 가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태영호 위원** 그렇다면 대책은 취해야 되겠네요, 주정부마다 다 다르다면.

○**소위원장 이명수** 김경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모든, 이런 경우에 국가가 이걸 다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안의 취지도.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1·2·3항의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 해당했을 때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만들어 놓아서,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어서 적어도 그런 긴급구조 상황이 발생해 있는데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영사관 직원들이 거기서 돈 계산하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안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그걸 보장한다면 실제로 재외공관에서 우리 재외국민 사고를 구난한 직원

들은 오히려 움직이기가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판단할 필요 없이.

○**김경협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사관 직원이 긴급한 상황에서 돈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법안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河泰慶 위원**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소위원장 이명수** 하태경 위원님.

○**河泰慶 위원** 김경협 의원님이 발의한 기본 취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 보호를 해외로까지 확장한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외교부에서 몇 가지 지적인 것처럼 법률화가 되려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 다른 해석의 이견이 없이 명료성이 구비돼야 되는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국내에서 119도 119 관할 범위가 있어 가지고 그 이상의 지역을 벗어나면 자기가 비용을 부담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현장에서 돈이 없으면 안 실어 주지는 않지 않아요? 일단 실어 주고 사후에 비용 정산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취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외국에 있더라도, 아까 김경협 위원님께서 예를 든 건데 우리 영사 직원이 그 자리에서 가격 협상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급하면 일단 해결하고 국가가, 우리 정부가 대신 비용을 지급하고 차후에 정산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현재 법 조항은 어때요?

○**외교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 정강** 해외위난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19조 3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사고와 해외위난이 조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조난 같은 것은 사건·사고에 해당되는 거라서 법을 엄격히 따진다면 19조 3항 이것을 좀 수정한다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구상권을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래서 저도 들어 보면 그 범위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료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야당 의원이니 야당 의원이 대안을 마련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같이, 여태까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확대할 수 있

는 중간 범위를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예, 알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의료와 관련된 사안이 기 때문에 외교부가, 물론 재외국민 보호는 외교부가 합시다만 그런 전문성에서는 외교부가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범정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사고일 수도 있고 또 질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병이 어떤 상황에서, 외국 나간 상황에서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이런 많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굉장히 카테고리를 나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행안부 이렇게 다 같이 관계부처에서 대책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이제 정리할 시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외교부에서 지금 말씀한 대로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송구스럽지만 김경협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대로 그대로 법안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이것은 개정안 3항이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상황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것은 해 두고 나중에 귀책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좀 더 명확하게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일단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하는 119 헬기나 119 구조대가 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기준들을 마련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려운가요?

○**외교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 정강**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119는 위원님 말씀과 같지만 국내에서도 응급환자가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수색·구조 법령에서도, 해상수색·구조에서도 구조된 자가 자부담을 하도록 법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법령도 좀 참고해서 범위는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렇게 하시지요, 한 번 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범정부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시면……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냥 외통위에서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다음 단계에 가면 다른 부처들이 또 다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사가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요. 조금 저희한테 관계부처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이렇게 해 주시지요. 2항하고 3항이 다 연계가 되는 건데 지금 외교부 차관 말씀대로 일단 관계부처와 더 협의해서 당장 급한 그런 조항은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더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김경협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법안심사에서 느끼는 건데 유독 외교부는 협의해서 가지고 올 거리를 여기 와서 ‘협의하겠습니다’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미리…… 그건 외교가 아닌가요? 좀 다른 부처하고 협의해서 가지고 나와서 결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협의했다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김경협 위원** 다음 번 법안소위 전까지 다 협의를 해 오세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예, 알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이 자체로서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좀 더 다른 부처와의 관계 또 해외 사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외교부 관한 사항은 여권법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통일부에 관한 법률은 시작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대략 우리가 6시 정도까지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통일부 법안을 심사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20쪽입니다.

먼저 김홍걸 의원안입니다.

작년 11월 23일 소위심사 요지입니다.

21쪽 상단입니다.

관용여권, 외교관여권과 관련하여 법률로 규정할 부분은 법률로 상향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할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난 연말 소위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부처 의견입니다.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주요 발급대상만 법률에 규정하고 기타 발급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며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녀 발급 연령 상한 기준을 27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와 관용여권 발급 대상자는 표에 정리돼 있으니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부처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3쪽, 안 제4조의2(관용여권 발급대상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는 앞서 표에서 보고드린 발급대상자를 공수처법 제2조 고위공직자의 정의 규정에 따라 순서를 배열하였습니다. 27쪽, 부처 수정의견에 1호부터 9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2쪽 부칙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사항입니다.

먼저 우측 비고안을 보시면 행정입법 정비를 위해서 시행일을 개정안의 3개월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가 법률로 상향 규정된 만큼 이 법 시행 이후 발급 신청하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부칙 제2조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합니다.

33쪽입니다.

참고자료, 주요국 국회의원에 대한 외교관여권 발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 윤건영 의원안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제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외교부장관이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 여권 발급 등의 거부 및

제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권 발급 등의 거부 및 제한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상향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6쪽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처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현행 제12조는 여권 발급 등의 거부와 제한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수정의견에서는 안 제12조에서 여권 발급 등의 거부 사항만 규정하고, 안 제12조의2를 신설해서 여권 발급 등의 제한 사유를 현행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제1호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좌측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 3월 28일 여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결정 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개정되었는데요. 그 후속 조치로 여권 발급 제한 대상자를 실행 선고를 받은 경우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로 구분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41쪽입니다.

안 제12조의3은 현행법 제12조제4항의 내용을 조문 이동한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여권 발급 거부·제한 여부 판단을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만 현행 규정상 대부분이 사법절차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위원회 심사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여권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대상자 결정에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있어서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부처 수정의견이 제시되었는데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42쪽, 참고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 최인호 의원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 사유에 로마자로 표기된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추가해서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려는 내용입니다.

4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부처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현행법 제12조의 여권 발급 거부 조항은 범죄자 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여권 발급을 제한하려

는 행정제재 조항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로마 자성명 변경만 불허되고 여권 발급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문 위치를 바꿔서 안 제7조의2에 별도 조항을 통해서 규율하겠다는 의견입니다.

45쪽입니다.

부칙 사항으로 개정안은 공포일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정비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이 제시됐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 지성호 의원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 국위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에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행한 인도적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해당 방문국의 법령 위반에 따른 강제추방으로 국위를 손상한 사람이 여권 발급에 제한 없이 해당 방문국을 다시 입국하여 유사 위법행위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문국 정부가 우리 여권 소지자의 출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나아가 무사증 출입국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 시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 김상희 의원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이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발급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여권의 사용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인터폴과 각 국가 간 무효여권 정보 공유 체계상 개정안에 따른 여권 효력정지 후 제재 사유가 해소되어 인터폴에 해당 여권의 효력 복구를 요청하더라도 각국이 이를 실시간, 자동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은 충분히 고려되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50쪽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처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서 검토 의견에서 보고드린 내용 등을 고려

해서 여권의 효력정지 대신에 해당 여권에 대한 무효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령에서 여권 무효처분 통지서 우편 송달 후 공시 송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의 시행일도 시행령 등 마련을 위해서 공포 후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52쪽 참고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관용여권에 대한 발급 현황 조사를 의무화하고 관용여권의 효력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관용여권 명의인의 소속 기관장에게 효력상실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 의무를 부과하고 효력상실된 관용여권 중 명의인 소속 기관장이 회수·반납하지 않은 여권에 대한 외교부장관의 직접회수 권한을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외교부장관에게 관용여권 발급 현황 관리 책임과 관용여권 발급 현황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소속 기관장에게는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관용여권 현황 조사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정안의 분기별 조사에 대하여 관용여권 명의인에 대한 신분상실 사실 확인 조사는 관용여권 소지자의 신분상실이 연 2회 주기로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반기별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용여권 명의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 관용여권 발급 대상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관용여권 명의인의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관용여권의 효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어서 현행 시행령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제2항 단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57쪽 하단입니다.

부칙 시행일 규정도 행정입법 정비를 위해서 개정안의 3개월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앞에 보통 지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걸 아마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주된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의사일정 제4항, 김홍걸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급대상자 조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은 현행 여권법 조문 체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국회의장, 공무로 국외 여행하는 공무원같이 주요한 발급대상자는 법률로 규정하고 또 공공기관 직원, 동반가족 등 기타 대상자는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개정안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동반자녀 연령 기준 하향 조정은 현행 27세는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높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수용해서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통상적인 연령을 고려하여 24세 기준, 즉 대학 졸업 정도의 기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외 근무 공무원의 동반가족 등에 대한 발급 범위 축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작년 11월 소위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외교관이나 공무원의 부양가족이 부임지에 체류 또는 출입국할 때는 그 목적과 신분에 부합하는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을 소지하는 것이 국제협약에 따른 관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을 소지해도 혜택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 정부는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에 수반되는 동반가족 역시 동일한 여권을 소지하는 것으로 당연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일반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동반가족의 체류와 입국이 곤란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외교관 자녀가 일반여권을 소지할 경우에 현지 거주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단기 방문만 가능하고 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학교 입학이 곤란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임자 동반가족에 대한 동일한 요건을 발급하는 것은 가족이 부임지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외통위 위원님들도 필요한 경우에 다 외교관여권을 발급 중이고 또 대부분의 국가가 국회의원 전체를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할까요, 5항?

○소위원장 이명수 4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4항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대체로 부처 수정의견하고 비교에 있는 의견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걸 위원님.

○김홍걸 위원 먼저 외교부가 입법 취지를 반영해서 중재안을 성안해서 공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동반자녀 연령을 27세에서 24세로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률에 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시행령은 부처가 임의로 언제든지 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나중에 상향 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 부분의 시행령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온 방식에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걸 위원 예.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기본적으로는 동반하거나 수행하거나는 저희 말로는 디펜던트(dependent)인데요. 디펜던트는 변화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KOICA 봉사단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파견 의료요원들이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법률로 올릴 경우에는 잦은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상 효율화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시행령으로 가져가서 저희가 자녀의 연령을 올리는 것으로 쓰려고 하기보다는

나중에는 상황을 봐서 더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을 시행령으로…… 당연하게 발급되는 사람들은 법률에 두지만 저희가 봐서 이걸 더 줄이거나 할 경우가 필요할 때는, 줄여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늘 다 법률로 할 경우에는 또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은 시행령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그러니까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역해서 저희가 시행령을 고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데 지금 ‘나중에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더 검토를 나중에 하신다는 뜻인가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일단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이 개정과 동시에 지금 6개월의 경과 기간을 주셨는데 그때 시행령을 어떻게 고칠지 위원님들께 다시 다 보여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있는 것 중에 시행령을 고친다기보다는 정비하고 지금 있는 조항을 남기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시행령을 많이 고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자녀의 연령 기준만을 말씀하신 대로 좀 낮추고—실제는 24세가 아니라 24세 미만이기 때문에 23세입니다.—그러니까 대체로 만으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부모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대학을 미국에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일반여권으로 하고, 물론 외교관여권으로 발행할 수도 있지만 일반여권으로 할 때는 비자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한 건데, 점점 추세가 부모하고 같이 안 살거나 방문할 필요가 적어진다고 하면 더 낮출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24세 낮추는 것까지 다 법으로 올리면 나중에 저희가 이걸 바꾼다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 더 높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걸 일일이 다 법을 바꿔서 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홍걸 위원 지금 정확한 통계가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현지에 부임해 있는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외교관 자녀 중에 24세 정도, 대학 졸업할 나이 정도 된 사람이 어느 정도 있으리라

고 보십니까?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저희가 19세에서 23세까지는 18년부터 22년 8월 기준으로 144건이고 전체 중에 한 74% 정도 됐습니다.

○김홍걸 위원 144건이라는 게 사람 숫자가 아닌 거지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예, 발급 숫자입니다. 그리고 24세는 12%, 25세에서 26세는 13%, 27세는 1%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7세는 실제로 발급도 안 하고 있었고 해서 저희가 봤을 때 23세까지는 대부분 같이 사는 게 많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23세가 적절하지 않나라는 그 안을……

○김홍걸 위원 그런데 23세 이상은 숫자가 얼마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예, 물론 있기는 하지만 24세 이상…… 24세지요, 그러니까 24세부터는 혼자 살 수도 있고 꼭 동반을 안 하더라도 보통은 떨어져서 사는 경우도 많다고 봤기 때문에, 물론 24세·26세도 사례가 없는 건 아니라 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게 취지에 안 맞다고 위원님께서 보시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보시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의견을 반영을 위해서 그래서 줄여 본 겁니다.

○김홍걸 위원 외교부 외의 다른 기관에서 23세 전후의 자녀가 이렇게 동반해서 가서 관용여권을 받는 경우는 파악이 좀 되신 것 있습니까, 혹시?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기본적으로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타 부처 공무원이지요—외교부 외 공무원도 저희가 외교관여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홍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숫자도 포함된 겁니까?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예.

○김홍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발급만 받았는지 실제로 같이 거주하고 있는지 그게 실태조사가 돼 있나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그게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하면 이게 꼭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저희가 외교관여권을 주고 있는 데요.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입니다. 미국에서 생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는 현지 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미국에서 방학 때 보통 방문을

하거나 가족 재회를 하는데 이럴 때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개인 여행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하고 일반여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근무하는 혐지 공관에 가서 가족 재회를 할 경우에도 다 이 외교관여권을 쓰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여권을 사용해서 비자를 받는거나 장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예상돼서 동일국에 거주·근무 요건은 저희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홍걸 위원** 웬만한 나라들은 일반여권으로도 방문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일 텐데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여행 시에는 관용여권을 쓰지 않고 일반여권을 쓰라고 권장하시지만 그건 권장일 뿐이고 실제로 그 사람이 아무 데서나 관용여권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그것은 여권법 위반이라서 본인 책임하에, 만약에 일반여권을……

○**김홍걸 위원** 그것은 다 적발이 가능합니까?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적발을 저희가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를 매년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김홍걸 위원** 그러니까 적발이 쉽지 않다는 뜻이네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그러니까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들고나가는 게 육로로 들고나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 결국 그 문제도 앞으로 개선할 방법을 좀 찾으셔야겠네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제가 볼 때 아마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확인을 해 보고요. 그렇게 혹시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면 그것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 4항에 대해서만?

없으시면 그러면 제4항에 대해서는 부처 수정의견으로 저희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특히 국회의원 발급 문제는 지난번에 소위에서도 신중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河泰慶 위원** 관용여권하고 외교관여권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나라마다 조금 차이를 두는 나라도 있겠지만 어차피 다 공무를 위한 여권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교관여권이라는 것이 비엔나협약에 따라서 외교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자꾸 그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면 저희 외통위원들은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그렇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관용여권이랑? 그렇게 굳이 하는 이유가…… 제가 전혀 차이를 실감하지도 못하고……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나라에 따라서 들어갈 경우에, 입국 시에 외교관여권에 대해서만 어떤 편의 또 의전적인 혜택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관용여권은 안 주는데?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예, 관용여권은 아닌데요.

그래서 어디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창구 같은 데 디플로매트 패스포트 온리(diplomat passport only)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교관여권 소지자한테 혜택도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기본 방침은 외교관여권의 발급은 그런 취지에 맞게 가능한 한 확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 같은 데서도요 필요에 따라서 외교관여권을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그런 것들은 자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은 부처 수정의견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건영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인데 우선 정부 측 의견……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5항 윤건영 의원 대표 발의하신 여권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여권법 12조가 이미 여권 발급 제한 대상 기관 등 주요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과 같이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도 법률로 상향 규정할 경우에 국민의 알 권리와 규제 법정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여권 발급의 거부·제한 대상자는 사법 절차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판단할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권 발급 거부·제한 처분이 연간 3000건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처분 절차를 일일이 다 심의에 추가할 경우에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의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범죄혐의자 등 여권 제재가 지연되는 문제도 오히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로서는 현행 시행령 규정의 법률 상향 규정은 수용합니다만 별도의 심의 절차를 추가하자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세요?

김홍걸 위원님.

○김홍걸 위원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습니까? 주요 선진국에서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어떤 규정이나 내용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제가 죄송하지만 다른 나라의 입법 사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시행령에 있던 일부 제한 사례를 법률로 옮겨서 좀 더 저희가 시행령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지금 입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데 이 필요성이 적다고 외교부에서는 하시는데 해외에 나가면 신분증, 우리 국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여권밖에 없는데 그것을 발급을 제한하고 거부하는 것을 외교부 재량에만 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것은 기본권에 관련된 것이니만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 가지고 타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구요. 행정적으로 소요가 발생은 하겠지만 이게 국민 기본권인 만큼 그 정도의 행정적 소요가 투입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위원님, 저희가 심의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심의 대상으로 지금 윤건영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장기 2년이나 3년 형을 받은 사람은 제한해라 이렇게 더 판단할 여지가 없이 딱 형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을 제한해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저희가 이걸 제한하고 말고를 판단할 여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저희가 어떤 것을 발급 제한을 할 때 필요가 있나면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테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위해가 있는 사람에게는 여권을 주지 말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량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것은 심의로 하도록 지금 현행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심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홍걸 위원 전문위원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홍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태영호 위원 35쪽에 있는 내용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연간 3000여 건의 여권 발급 거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한 해, 매해?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예.

○태영호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60여 건 정도다?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규정에 형사처벌을 받은 기준 같은 것이 딱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태영호 위원 명확하게 있는 건 바로바로 거부하고……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별도 심의할 필요 없습니다.

○태영호 위원 좀 애매한 것만 추려서 하는데 3000여 건 중에 60여 건만 지금 심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니 지금대로 가는 게 좋다 이거지요, 몽땅 3000여 건을 다 건건이 심의하지 말고?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일단 지금 부처 수정의견 그대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최인호 의원 발의한 내용, 43페이지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6항 최인호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자성명의 정정·변경에 대한 거부 처분은 침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로마자성명 변경 거부 대상자를 현행 여권법 12조 여권 발급 거부 대상자에 추가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범죄자 등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막아야 하는 대상자를 규율하는 행정제재 조항입니다. 반면에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로마자성명 변경 거부는 단순히 로마자성명 변경만 불허되고 여권 발급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권법에 별도의 조항 신설을 통해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여권 수록 정보의 하나로 성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여권법 7조에 이어서 7조의2를 신설하고 여기에 현행 시행령 3조와 3조2에 분산되어 있는 로마자성명의 수록과 변경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면서 변경 거부 규정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수정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6항에 대해서도 부처 수정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7항은 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인데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7항 지성호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여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강제추방 당한 국민에 대하여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여권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외국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재발될 경우

에는 해당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출입국 및 체류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여권의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도 우려가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이 인도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중국 등에서는 또 불법행위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타 국위손상행위와 마찬가지로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행정법원도 탈북자 밀입국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징역형 및 국외 추방된 사람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 관련 외국법령 위반 활동 등으로 여권 발급이 제한된 사례는 6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개정의 실익도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와 재외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태영호 위원님 의견 없으신가요?

○태영호 위원 김홍걸 위원님 먼저……

○소위원장 이명수 김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김홍걸 위원 짚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수위의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해야 강제추방 조치까지 갑니까?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나라마다 다른데요. 나라마다 다른데, 주로 중국에서 발생했던 것들입니다. 징역형 3년 이상이거나 중형인 경우인데요. 형사사법의 유죄판결이 나고 그다음에 강제퇴거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추방이지요. 그래서 대사관에 저희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요건에 아까 말씀드린 여권법 제한, 국외에서 위법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인신매매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중범죄입니다. 중범죄인데, 나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좀 전에 개정해 주신 시행령에 있던 부분이 올라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납치,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범죄를 한 경우입니다.

○김홍걸 위원 당초에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이런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또 그런 경우를, 결국은 여권 재발급 또는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거주이전·여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데요. 저희가 신중하게 하려고 시행령에 있던 것을 법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또 같은 재범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있고 이것도 1년에서 3년인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제한 연수가 달라집니다.

○**김홍걸 위원** 지성호 의원이 내놓으신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 약간 국가 간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그래서 이것을, 중국에 다시 가서 활동을 하셨을 때 그러면 한국 여권은 받아주지 않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특정 국가에서 한국 여권에 원래 무사증을 줬던 것을 무사증을 주지 않겠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여지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탈북자 인권보호라는 그런 중요한 공익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무사증, 우리 여권 제도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도 판례를 통해서 이게 확인된 사안이라서 행정부로서 신중하게, 소극적으로 보이시겠지만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할 수밖에 없던 배경이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 다시 말해서 잠재적인 외교적 마찰 소지가 있는 것은 가급적 피하자 그 말씀이네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마찰 소지도 있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또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잠재적으로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탈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판단은 좀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이 행정법원에 가서 다 그렇게 정부의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 알겠습니다.

○**태영호 위원** 지성호 의원이 이 개정안을 낸 여러 가지 취지 중의 하나가 가령 우리가 이해하

면 탈북자 구출을 위해서 중국에 가서 활동하다가 공안에 잡혀 가지고 형을 받아서 강제 추방됐습니다. 그러면 추방돼서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앞으로 그분에 대해서는 여권이 재발급이 안 되는 겁니까, 아예 여권 자체가?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그것은 저희가 1년에서 3년간의 기간을 정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재발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중국에서 형을 살고 추방돼서 나왔어요. 나오면 그때는, 왜냐하면 다시는 중국에 안 가겠는데 여권 재발급이 안 돼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 주변 나라들 여행까지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가요?

그러면 중국에서 있었던 강제추방 때문에 해외 자체를 못 나간다는 거잖아, 3년 동안은?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예.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재발급이 안 된다는 거지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예, 할 수 있다는 거고 심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니까 꼭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일부 6건에 대해서는 재발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중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 여행 가자고 해도 여권이 안 나온다……

○**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민철** 예, 그렇습니다.

○**태영호 위원** 이것 잘 심의해서, 미국에 가자고 해도 안 나온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 선교사분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 법에 어긋나게 지하교회 운영하다가 걸려 가지고 또 강제추방해서 오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는 뭐 지하교회, 중국에 안 가겠다, 이제는 선교를 아프리카에 가겠다 그런 경우에도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여권 발급이?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예. 그런데 처분을 받으신 형이나 이런 게 어떤가에 따라서 기간의 제한이 있는데요. 그러나 기간이 지나면 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여권 발급 자체가 제한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태영호 위원** 불이익이 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중국 당국이 일단 자기네 역내에 들어와서 탈북민 구출이라든가 비밀 지하교회라든가

이런 활동을, 미션 활동을 했을 때 잡혀서 형을 받고 추방됐다 하면 본인들 자체가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놓고 중국 입국이 안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국 경내의 경우도 안 돼요. 바로 중국 당국이 와서 잡아 가지고 타고 온 비행기로 바로 되돌려 보내는데, 물론 우리가 여권을 재발급하지 않아도 중국 자체가 스스로 이렇게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권을 재발급하는데 ‘그 형을 받은 중국 여행만은 5년 내로 못 간다’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아서 여권을, 그러면 이것 애매하잖아요. 일본도 못 가고 미국도 못 가고 뭐 태국도 여행도 못 가고 이렇게……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여권을 발급할 때 이 여권이 어느 국가에는 못 쓰는 여권이다 이렇게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있을 때 저희가 여권발급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러면 1년만 정지하고 1년 후에는 여권을 발급하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의 검토 재량에 맡기는 방안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 법률 조항으로 입법은 하지 말자……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하태정 위원님.

○河泰慶 위원 제가 볼 때 이것 이중처벌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게 곧 국익 손상 행위와 동일시하면 안 되지 않아요? 탈북자 구출하다가 중국에 잡힌 사람들,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인권운동가로 칭송받고 상도 받아요.

○태영호 위원 영국 여왕상까지 가서 받았잖아.

○河泰慶 위원 그러면 국익을 증진하는 거지. 그리고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위법한 행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권 탄압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한국인들 중에서도 탈북자들 돕다가 중국 감옥에서 고문 받고 형을 살았지요. 그 사람들은 중국 못 들어가요. 중국에서 안 받아요, 여권이 있더라도.

그런데 그 사람들 외국에서 상 주라고, 미국에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권 발급 안 해서 상

못 받으러 간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이중적인 인권 탄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외국에서 처벌 받았다는 것을 곧 국익 손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그와 관계없이 또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정말 흉악 범죄에 관여가 돼서 같은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발급하는 데 법규정에 있어서 그런 것을 어느 나라의 어떤 걸로 구분할 수 없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제한을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우리의 재량이 있다면 여권발급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고려가 되면 여권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해당 사항들이 그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논의는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의 흉악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여권 발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河泰慶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하는데 이것을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받았지만 민주주의 인권 수호 활동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 국익이라는 뜻이, 그렇잖아요. 국익이라는 뜻 안에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 인권 옹호한 사람, 우리 국익 자체가 민주주의 수호인데……

엇그저께 우리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했고 내년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인권활동가를 탄압하는 법을 대한민국 외교부가 제정한다는 게 대통령한테 면이 서겠어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소위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다른 나라에 가서 반정부 시위 같은 데에 우리 국민이 연루가 돼서 그런 비슷한 처벌을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민주주의 수호 활동인지 여부가 사실은 판단이 조금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河泰慶 위원 그것은 그다음 2차적인 문제고,

그게 어떤 활동이 민주주의 인권 수호 활동인지 2차적인 문제인데 국제적으로 가장……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탈북자인데 북한 영토를 이탈해서, 북한 지역을 이탈해서 외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잖아요. 그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국민 보호 활동을 한 사람인데 애국자인데, 헌법 수호 활동을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페널티를 주는, 그 사람의 해외여행 자유를 막아 버리는, 대한민국 외교부가 막아 버린다 이것은 외교부가 굉장히 좀…… 어쨌든 외교 편의주의에 기반해서 판단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지요. 우리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그러면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민주주의 수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활동에 대한 그런 개념을 또 새로 제기해 주셨는데요, 한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지금 지성호 의원님 발의 개정안을 그대로 하기에는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河泰慶 위원 아니, 그것을 그대로 하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하고 우리가 주최국이 됐는데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후진국 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예, 제가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소위에서는 이것은 정부의 그런 우려를 반영해서 보류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제7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8항과 9항은 통합적으로 부처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먼저 8항 김상희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정안에 명시된 여권 효력 정지 제도는 기대한 만큼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효력 정지와 마찬가지로 국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 통지절차가 필요합니다. 효력 정지는 일단 효력을 상실시켰던 여권을 제재의 필요성이 소멸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각국의 인터폴을 통해서 무효 여권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나 이게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통보가 되면 효력이 복원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효력정지 제도를 대신해서 반납 명령 없이 그냥 무효 처분하는 내용을 여권법에 신설하고 무효 처분의 통지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무효화까지 소요 시간이 현행 6주에서 2주로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법과 시행령 개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안을 반영해서 여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9항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그리고 9항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지금 현재도 관용여권 발급 대상자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 체계를 법률상 의무로 규정할 경우에는 보다 효율적인 관용여권 현황 조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다만 관용여권 소지자 신분 상실이 사실상 정년, 전출 등으로 연 2회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황 조사를 분기별로 시행하는 것이 굳이 실익이 있는가, 현행처럼 반기별로 시행해도 계속 효율적인 업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정 내용도 외교부의 효과적인 관용여권 관리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이상 5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이들을 조정 통합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외교부 소관 안건 심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해서 나오시고요, 좀 저기하시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어느 정도 해서 그 설명하실 때 제시한 의견을 조정해서 나오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소관 안건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조현동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내 정리)

○소위원장 이명수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입니다만 통일부 소관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김기웅 통일부차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2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6)
2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3)
2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6)
30.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4)
31.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5)
32.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6)
3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2)
3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1)
3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5)
3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0)
3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2)
3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7)
3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1)
4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4)
4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5)

4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19)

4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9)

4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3)

4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5)

4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4)

4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4)

4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2)

4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7)

5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0)

(17시14분)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모두 2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3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29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항, 2쪽이 되겠습니다.

김홍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한 간에 물품 반출·반입 시 통일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승인 권한을 부

여하는 내용입니다.

시·도지사에게 승인 권한을 부여하면 승인 요건을 완화하거나 절차를 단축하는 게 가능하여 향후 지자체의 남북 교류 시 적시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승인 권한이 이원화되어 승인 내용에 일관성이 없거나 법적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간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에게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권한 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위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김경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대북물품을 지원하는데 지방재정법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불용품 이외의 물품도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자체를 협력사업 추진주체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2020년 12월 이 법의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재정과 공유재산에 관련된 내용임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29항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동식물을 검역조사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체계상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준용규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5쪽 맨 아래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3건의 개정법률안인데요.

차관께서 우선 첫 번째, 27항·28항 두 건에 대해서 먼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기웅 27항, 28항 관련하여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출·반입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중앙정부가 책임성을 갖고 종합적 구도하에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라는 점에서 반출·반입 업무도 질서 있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국가사무로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나 관세청 등 관계부처도 저희 부처랑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중검토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니까 현행 규정 유지하는 의견을 지금 말씀하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예, 그렇습니다.

다음, 28번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물품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제안하신 개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도 타당하고 또 그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 개발이나 무력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계속되는데 저희 정부로서는 이런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현재 입장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국민들이나 국제사회에서 볼 때 일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에는 이견이 없지만 법률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다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검역과 관련된 교류협력법 개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다만 그 내용 중에서 검역법 중에 특정한 항들을 어떻게 준용할지를 저희가 볼 필요는 있고요. 현재도 시행령에서 준용하도록 돼 있지만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상향 입법해서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이라면 저희는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우선 27항, 28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홍걸 위원님.

○김홍걸 위원 여기서 다른 교역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중앙정부만이 정부가 아니고 지방정부도 주민에게 선출된 정부이고 공공기관인데 민간사업자와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지방자치 권한의 확대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흐름이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 개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방단체가 실시하는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해서 승인권자를 달리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달라야 된다, 어느 정도 재량권은 주어야만이 지역민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유엔제재라든가 국내법을 준수하는 문제는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통일부에서 파견된 직원도 있고 하나까 충분히 자문을 해 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출 승인기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자면 평균 9.6일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표준적으로 편차가 어떻게 됩니까? 확인하신 것 있나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위원님?

○김홍걸 위원 예.

○통일부차관 김기웅 지금 말씀 주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국방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통일·대북 정책이 중앙정부가 해야 될 국가사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교류협력도 대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축이지 않습니까? 국방도 있지만 이 중요한 축을 뭔가 종합적인 대북전략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우방국 간의 조율, 정교한 접근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중앙정부가 맡아서 국가사무를 하는 것은 적절한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도 다르고 또 판단도 다르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할지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분들이 과연 그런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또 각국과의 외교적인 조율까지도 해서 대북제재 리스트 이런 것들 챙겨서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분권은 좋은 것이긴 한데요, 아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특히 최근에 북한의 이런 도발 때문에 제재국면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교류협력 경색도 있고. 그러면 지금은 더욱더 보다 조율된 중앙정부 중심의 일관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이런 분권 부분을 논의하

기에는 좀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데 제재위반 소지를 최소한 줄인 상태에서 하자는 뜻이고요. 그런데 외교도 중앙정부가 큰 줄기는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방정부가 외국하고 교류하는 것을 일일이 허락받아 가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고.

좀 전에 반출 승인현황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20년 중반까지 178건 중에 20일 이상 소요된 게 16건, 15일에서 20일 소요된 게 13건 이래서 평균 소요 일수를 훌쩍 상회하는 것이 한 17%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일 승인 난 것은 한 39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사기간에 중간이 없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어떤 것은 터무니없이 오래 걸리고 어떤 것은 금방 되고 이러한 상황이 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대북협력사업을 좀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제한적이거나 권한을 주자는 뜻입니다. 관련 시행령 정비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 돼야겠지만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라는 취지에서 이것은 추진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부차관 김기웅 하여튼 저희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아직은 그리고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통일부 차관 맞습니까?

○통일부차관 김기웅 예.

○김경협 위원 통일부 차관 맞지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예.

○김경협 위원 통일부의 임무를 혹시 알고 계세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통일부의 임무는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김경협 위원 그래 가지고 통일을 이루시겠습니까?

○통일부차관 김기웅 글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제재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통일은? 지금 국제사회 제재가 추진 중인데 무슨 통일이예요? 통일부 그때까지 없었다가 국제사회 제재 끝난 다음에 통일부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김경협 위원** 왜 다릅니까? 그러면 통일부가 뭐 할 겁니까, 그때까지?

○**통일부차관 김기웅** 통일부가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하고 교류협력 하는 것만 통일부가 할 일이 아니고요. 국제사회에서 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만드는 것부터 해서 국내 국민들에게 통일……

○**김경협 위원** 국제사회에 유리한 여건은 외교부가 만들면 되고요. 별로 이렇게……

○**통일부차관 김기웅** 그렇게 따지시면 뭐…… 그런데 어쨌든 북한하고 교류협력하는 게 통일부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경협 위원** 누가 전부라고 그랬어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말씀하신 게 교류협력 안 하면 뭐 할 거냐 물으셔서 제가……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통일부가 아예 교류협력할 생각도 없어요. 없는데……

○**통일부차관 김기웅** 그렇지 않는다고요.

○**김경협 위원** 있어요, 있기는?

○**통일부차관 김기웅** 예,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제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교류협력할 필요 없다며요, 지금.

○**통일부차관 김기웅**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는 제재를 존중해야 되고 지금 말씀은 그것이……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교류협력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런 법안이 필요 없다, 지금까지 설명한 게 그런 취지였잖아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교류협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입장인데 국제사회와의 조율하에 저희가 때를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교류협력을 국제사회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위원** 누가 무조건 국제사회하고 상관없이 교류협력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통일부차관 김기웅**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김경협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 차관이 설명하는 논조를 보면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북 압박해야 될 시점이고 교류협력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지금까지.

○**통일부차관 김기웅** 아니요, 교류협력이 필요 없다고 아니고 지금 교류협력을 강조할 시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교류협력을 하려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어야지 교류협력, 그다음부터는 방안을 찾을 겁니까?

○**통일부차관 김기웅** 지금 교류협력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국제제재도 있지만 북한이 현재 안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태도도 저희가 봐야 되고요.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건이 돼야 되고 제재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부분은 풀고 예외규정 인정받을 것은 인정받고 북한이 또 호응한다면 하는 것인데……

○**김경협 위원** 대북제재가 지금 몇 년 정도 된 줄 아세요, 대북제재가 시작된 게?

○**통일부차관 김기웅** 글썄,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대충, 대강이라도.

○**통일부차관 김기웅** 대포동 쏜 거니까 2000년대, 2006년 이후가 되겠네요.

○**김경협 위원** 2006년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예.

○**김경협 위원** 대북제재가 시작된 게요 1차 북핵위기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 가지고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북제재는 있어 왔습니다. 30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속에서도 교류협력은 부분적으로 그때 그때 이루어져 왔지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예.

○**김경협 위원** 그리고 교류협력이 진행될 때는 그나마 남북관계가 좀 더 원활하고 긴장도 완화되고 화해하는 분위기도 좀 만들어졌다가 교류협력이 끊기고 나면 남북 간에 실질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계속 그런 상황을 되풀이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통일부차관 김기웅** 글썄, 그것은 조금…… 하 여간 설명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교류협력이 돼서 긴장이 완화된 건지 긴장이 완화됐기 때문에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는 하여간 선후관계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년에, 예전에……

○**김경협 위원** 차관님!

○**통일부차관 김기웅** 예.

○**김경협 위원** 여기서 지금 말장난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아니요, 그런 것 아닙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아니요, 지금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김경협 위원** 대답하는 태도가 그게 됩니까?

○**통일부차관 김기웅**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경협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뭐 하러 앉아 있어요, 거기에!

○**통일부차관 김기웅**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 설명에 대해서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거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을 말씀……

○**김경협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왜 앉아 있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말귀도 못 알아들으면서 거기 왜 앉아 있냐고!

○**통일부차관 김기웅** 하여간 저는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협 위원** 정부 입장을 쉽게 얘기하면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교류협력은 필요 없고 따라서 이런 법안을 지금 심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김기웅** 다시 말씀드리는데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교류협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

○**김경협 위원** 내가 그러면 잘못 들었어요, 지금!

○**통일부차관 김기웅** 저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이걸 심사할 시기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심사할 시기가 언제입니까?

○**통일부차관 김기웅** 남북 간의 관계가 긴장이 풀리고 교류협력……

○**김경협 위원**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걸 지금 법안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통일부차관 김기웅**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법안 내용, 특히 의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내용에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그것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시점이 언제가 좋은가에 대해서 저희가 시기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지요. 이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김경협 위원** 그 시점이 언제인데요, 시점이?

○**통일부차관 김기웅** 시점이 앞으로 상황이 좀 완화될 때를 기다리자 이런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경협 위원** 지금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후에 제재와 압박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교류협력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제도를 정비해 놓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때 가서 바로 시행이 될지 언제쯤 시행이 될지는 몰라요, 누구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법안심사에 임하는 태도가 지금 할 필요도 없는 것을 왜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여기는 할 일이 없어서 법안심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할 일이 없어서 법안심사하고 있냐고?

○**소위원장 이명수** 김 위원님 정리하시고……

태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영호 위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게 27번이지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8번이 아니고.

○**통일부차관 김기웅** 둘 다……

○**태영호 위원** 둘 다 동시에 같이 하는 건가요?

27번, 김홍걸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인데 차관님, 만일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물품 반출·반입 시에 통일부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통일부와 전혀 관계없이?

○**통일부차관 김기웅**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관님께서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통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서 지방분권화는 인정하지만 물품 반출·반입 이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예.

○**태영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저도 차관님 생각과 매우 유사한데 만일 이 법이 통과된다면 북한의 대남 전략 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겪었잖아요, 2019년도 경기도에서 있었던 사건. 그때 하노이 회담 끝난 다음에 북한이 문재인 정부와의 모든 교류와 소통, 협력을 다 단절했습니다. 단절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된 데 의하면 완전히 다 끊은 줄 알

왔더니 경기도하고는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에 보고도 안 하고 아태협하고 돈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이런 정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정권이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진보 정권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러면 앞으로 이게 통과된다면 중앙정부에서는 못 하게 하는데 지방정부에 의하면 그것이 경기도일 수도 있고 강원도일 수도 있고 어느 한 도에서는 그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의 아태위가 어디로 쏠릴까요? 저는 중앙정부하고 대상 안 하고 바로 그러한 물품의 반출·반입이 가능한 어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붙을 것 같거든요. 이런 소지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위원** 저는 이것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을 만약 우리가 통과시킨다라고 한다면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어떤 걸 하겠다고 결정해서 통일부의 반출·반입 허가를 받는 이런 시스템을 더 보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도 도와주면서 통일적으로 총체적으로는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관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북한 정권에 놀아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2019년에 일어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일단 현재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국가사무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보다도 조금 더 한 걸음 진전시켜서 지방정부의 분권화도 좀 맞추고 정부의 통일적인 관리시스템도 유지하는 이런 절충안 같은 게 없을까요, 여기서?

○**통일부차관 김기웅** 저희 입장은 그런 부분들도 지금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가 조금 완화되고 실제로 교류협력이 굉장히 활성화 돼서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다 통제하기보다는 각 자치단체들이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긴다면 그 시점에 가서는 당연히 일부 권한이 이양되고 위임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 단계에서,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현재 교류협력이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제사회와의 조율도 필요한 이 시점에서 권한을 이양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세요?

○**河泰慶 위원** 제가 좀……

○**소위원장 이명수** 하태경 위원님, 김홍걸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하시지요.

○**河泰慶 위원** 그러지요.

○**김홍걸 위원**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마치 지자체가 자기들 멋대로 정부의 방침과 반대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방정부가 그렇게 무책임한 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그것을 그런 정도로 재량권을 허용하자는 게 아니고 일부 제한적으로 재량권을 주어 보자 하는 뜻인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과장된 얘기 아닌가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게 약간 위임의 범위를 줘서 어떻게 하자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우리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런 걸 논의할 상황이나?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부가 더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될 국면이지 않느냐, 남북관계 국면이. 그렇다면 어디 넘긴다, 위임한다 하는 자체가 지금은 더욱 아니지 않느냐……

○**김홍걸 위원** 오히려 교류가 없는데 뭘 통제합니까, 현재?

○**통일부차관 김기웅** 아니요, 그러니까 더욱더 뭘가 일사불란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필요한 시점……

○**김홍걸 위원** 없는데 일사불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교류 자체가 현재는 아예 없는데?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통일부차관 김기웅** 없는데 그러면 또 지자체에 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홍걸 위원** 그건 그렇고, 좀 전에 태영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중앙 쪽에 알려 주지도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방정부가

승인을 해 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부분 협의하게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닌가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시행해서 보완하고 될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중앙정부의 사무로 되어 있는,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 대북정책의 중요한 한 축인 교류협력에서 이 부분을 지방정부에 일부 이양하는 문제를 지금 과연 논의할 상황이나, 우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게 필요하다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업무하시는 데 지장이 많고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중앙정부가 어떤 면에서는 국제사회와 조율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가고 있는데 지방정부에 일부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서는 화를 내시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홍걸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듣고.

혹시 대북 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 지방정부가 일부라도 위임받아서 처리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제가 모두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홍걸 위원** 부족한 곳들도 있다?

○**통일부차관 김기웅**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경기도처럼 굉장히 경험이 많은, 제주도도 그렇지만 경험이 많은 지자체도 있고요. 별로 해 보지 못한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고 또 지자체장께서 어떤 분이신가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떻다라고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 지자체장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통일부차관 김기웅** 의지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김홍걸 위원** 의욕이 과해서 무리한 일을 벌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아니요, 너무 소극적인 분도 계시고 실제로……

○**김홍걸 위원** 소극적인 거야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안 할 텐데?

○**통일부차관 김기웅** 어떤 분은 또 의욕이 많은 분도 계시고 지자체별로 의욕이나 의지나 일 처리하는 능숙함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홍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하태경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河泰慶 위원** 김경협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에 보면 현행법에도 협력사업 추진은 지방정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예.

○**河泰慶 위원** 그런데 협력사업이라고 하면 북한에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예.

○**河泰慶 위원** 그런데 굳이 추가로 물품 지원, 양여 근거 명시하는 명시적 조항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현행법으로 다 커버 가능한 것 아니에요?

○**통일부교류협력실장 박철** 지방 물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지자체별로 조금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을 부담을 안 느끼는 지자체들도 있는 반면에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담을 느끼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이런 부분을 통일부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면 그것에 입각해서 좀 더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목소리들은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이건 통일부 승인 없이도 가능하게끔 하는 법 조항이네요?

○**통일부교류협력실장 박철** 통일부 교류협력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면 좀 더 합법적으로……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통일부 동의 없이도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서 북한에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함의하는 거라는 거지요, 이 조항은?

○**통일부교류협력실장 박철** 아니요, 통일부의 승인은 받아야 되지만 지방의 국유재산 이것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줄 때도 교류협력법에 법

적 근거가 있으면 교류협력법에 근거해서 좀 더 명확하게 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통일부차관 김기웅**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들이 제한을 받는데 교류협력법에 특례 규정처럼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북한에 양여할 수 있는 재량권이 생겨서, 사실 협력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정할 때, 원래 했을 때 사실은 법리적으로 이것도 같이 가야 되는 게 타당했는데……

○**河泰慶 위원** 그래서 법적인……

○**통일부차관 김기웅** 법리적 타당성은 있다고 보는 거고요.

○**河泰慶 위원** 법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이해하신 거고……

○**통일부차관 김기웅** 같이 갖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河泰慶 위원** 시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

○**통일부차관 김기웅** 빠졌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저희가 내용에는 이견이 없고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건 동의하는데 추진 시점을 좀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河泰慶 위원**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도 그 점은 통일부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김홍걸 위원 여기 계시지만 제가 볼 때 이 조항은 정부가 보수 정부라서 반대하기보다는 진보 정부일 때도 허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시기도 그렇잖아요. 2021년 5월 8일 발의했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입장이었으면 이미 통과됐을 수도 있는 법인데 왜 진보 정부에서도 어렵냐면 대북 협상이라는 게 고도의 중앙 집중적인 협상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별도 주머니를 찬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대북 협상력이 굉장히 약화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나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아지고 그래서 서로 대사관에 준하는 연락대표부나 어쨌든 평양에 우리 남쪽 대표부가 세워지고 남쪽에 북한의 대표부가 세워지고 그런 단계에 가면 지자체의 재량을 폭넓게 허용하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시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 위원** 차관님, 이 법안에 대해서 김경협 위원이 얘기한 것은 21년도에 법안이 발의가 되

고 그다음에 또 소위 상정도 됐는데 그 시기와 지금 시기가 물론 남북관계가 좀 달라요.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에 따라서는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지만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대비를 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도지사들이 이 법이 있다고 그래서 또 마구 퍼 주고 이런 건 아닐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기가 이렇게까지 계속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상태로 가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이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시작은 담대한 구상으로 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먼저 열자 이렇게 시작한 한 것 같은데 계속 먼저 열지 못하고 하나도 대화를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진전을 전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라도 좀 만들어 놔야지…… 그래서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열 테니까 너네들도 적극적으로 해 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하면 우리도 그냥 세게 치고 거기서 다시 또 더 세게 치고 이러면서 계속 뽕뽕 얼어붙고 있어요. 그게 무슨 담대한 구상이에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쫓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자꾸 시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중간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김경협 위원이 법 만드는 차원에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법을 제출했는데 지금은 너무 관계가 안 좋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니까 화를 내고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전향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차관 김기웅** 제가 하여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대로 원래 이게 같이 됐어야 될 내용인데 안 돼서 이번에 내신 것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기 문제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고 북한이 계속 저렇게 교류협력을 막고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보이고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보기에 6월, 7월 갔을 때 앞으로 북한이 또 문을 열고 상당히 대외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장담은 못 하지만.

그러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한다, 이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개정했을 때 지자체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저희가 1년, 2년 뒤에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국민들이나 국제사회가 볼 때 지금 무슨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한다는 자체가 좀 의아하게 보일 것 같으니까 제 얘기는 일단 상황을 좀 더 보시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이것 안 하겠다든가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봐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박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 시절이 좋을 때 이 법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면 통일부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런 법안이 있으면 좀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좋을 때 해놓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안 좋아지고 못 하고 또 좋아질 때는 다른 것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언제 이런 걸, 담대한 구상을 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좋을 때 되레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좋을 때 탁 그게 더 트리거(trigger)가 돼서 더 쓸 수 있는 거지 안 좋다고 해서 자꾸 막아 놓으면 계속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그러니까 위원장님과 여기 소위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한번 의견을 모아서, 지금 그런 판단은 사실 정무적 판단도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시고 한쪽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좀 그러니 조금 더 상황을 보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의견 모아 주시는 대로 제가 일단 따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태영호 위원님.

○태영호 위원 박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연속으로서 제가 좀……

김경협 의원의 개정안 내용을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에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걸 좀 이용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자 이거지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예.

○태영호 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물품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유재산이겠는데 이걸 만약 활용한다고 할 때 행정안전부 의견을 통일부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일부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한다고 할 때 행안부의 의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공유재산 이 문제에서?

○태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의 관계는 괜찮다, 행안부하고는?

○통일부차관 김기웅 다른 의견이 오지는 않았 습니다.

○태영호 위원 오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차관 김기웅 저희 의견 문의에 대해서 답이 없었습니다.

○태영호 위원 답이 없다는 건 동의한 걸로 봐야 되네요?

○통일부차관 김기웅 일단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27항, 28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고 29항은 특별한 의견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다만 29항 중에 준용규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건 우리 김홍걸 위원님, 동의하시는 거지요? 식물방역법 몇 조라고 딱 특정했으면 좋겠다?

○김홍걸 위원 예.

○소위원장 이명수 15페이지, 16페이지 수정의견에 식물방역법 제 몇조라고 특정했으면 좋겠다, 그걸 수정해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김홍걸 위원 예.

○소위원장 이명수 그렇다면 일단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건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심사 대상을 놓고 이렇게 몇 건의 사항 가지고 논의했는데 앞으로 우리 법안심사소 위원회 일정을 조정해서 빨리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기다리셨는데 심의 못 하고 이렇게

마치게 돼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들의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과 심사한 부분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차관님과 실·국장님들,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 경 협	김 홍 결	박 정	이 명 수
이 상 민	태 영 호	하 태 경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 기 열
전 문 위 원	정 홍 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제 1 차 관	조 현 동
조 정 기 획 관	황 소 진
인 사 기 획 관	김 학 조
아 세 안 국 장	정 의 혜
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 민 철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정 강
개발협력국장	원 도 연
공공문화외교국장	이 경 아

통일부

차 관	김 기 웅
정 책 기 획 관	강 연 서
통 일 정 책 실 장	이 주 태
교 류 협 력 실 장	박 철
인 도 협 력 국 장	정 소 운